



## 대체식품 표기 기준 강화 및 우월성 표기 금지

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고시(안) 관련, **축산단체·업계·소비자·학계 등 7차에 걸친 논의**





## 대체육, 대체고기 표현 금지



협회

‘대체육’·‘대체고기’로 표기 및 용어 사용 문제제기

결과

‘고기’·‘육’의 표현 금지, 대체식품으로 용어 정리



전국한우협회



## 모방식품 등의 표현 요구



### 협회

‘대체식품’은 기존식품을 대신한다는 의미이므로, 모방식품으로 표기 요구

### 결과

국제적으로 모방(이미테이션)이라는 용어는 기준되는 것과의 성분함량 차이가 20%이상 날 경우만 사용가능하여 불인정





## 대체식품 표시 원칙 수립

강화된 표시 기준 마련



1. 주 표시면에 '대체식품' 용어 표시

2. 식물성·원재료명·기존명칭 표시

3.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을 표시





고수분 대체육 제조기술 적용 치킨강정, 꺾바로우, 탕수육(뜨란제품)

## 대체식품의 우월성 표기 금지

- ✓ 중립성 준수, 우월적 표기 금지 협의
- ✓ '베러미트', '고기대신' 등 가치중립성에 위배되거나
- ✓ 'no콜레스테롤' 등 대체식품이 우위에 있는 듯한 표기 광고 금지

